

2025년 제2회 예산군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5년 제2회 예산군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4월 16일

예산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근무기간	담당업무
정책지원관	지방행정 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2. 근거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 다.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마.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기준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시점에 근무 가능한 자

나.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기준일)

임용예정분야 (직급)	자 격 기 준
정책지원관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법률자문, 법무행정, 공공행정 등 ○ 관련분야 학위 : 행정학과,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등 일반 행정 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관련분야 행정·예산·기획·연구·조사·분석·입법지원 등의 실무경력자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를 상세히 명시) * 공공기관 범위 :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한 공공기관 ** 예산결산업무수행 경력자 우대

※ 경력기준은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근무기간, 근무시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상세)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전일근무(8시간/일) 아닌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일부 인정

4. 보수 수준

임용분야	임용직급	보수예정액 (2025년도 기준)	비 고
정책지원관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하한액 48,572천원	주 40시간 (8시간/1일)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에 따른 금액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직급별 하한액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하였음
- ※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함.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5.7.(수)~5.13.(화) <5일간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본인)
- 접수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
 -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 응시원서 접수 시 인적성 검사 병행 실시(약 30분 소요),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나. 시험일정

시 험 명	공고기간	응시원서 접 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5년 제2회 예산군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2025. 4. 16. ~ 2025. 5. 6.	2025. 5. 7. ~ 2025. 5. 13.	2025. 5. 21. 예정	2025. 5. 30. 예정	2025. 6. 4. 예정

○ 1차시험(서류전형) : 예산군의회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시행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정확·논리 등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예산군의회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예산군의회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예산군 수입증지 7,000원(일반임기제)

· 판매장소 : 예산군청 1층 민원봉사과 구입 후 응시원서에 증지 날인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검증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서식 제7호) 1부

나.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상훈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이 가능합니다. (※ 방문수령만 가능, 본인의 원에 의거 원본에 한하여 반환 가능, **응시수수료 반환 불가**)

※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2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재공고 시 당초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효력이 인정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예산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군의회(☎ 041-339-7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출서류 서식 각 1부(별도 첨부).

□ 제출서류 목록

구분	목 록	제출대상자	작성여부
제 출 서 류	1. 응시원서	모든 응시자	
	2. 이력서	모든 응시자	
	3. 자기소개서	모든 응시자	
	4. 직무수행계획서	모든 응시자	
	5.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검증 동의서	모든 응시자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모든 응시자	
증 빙 서 류	7.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학위증서 또는 학위증명서 사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모든응시자	
	8.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 가 안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모든응시자	
	8-1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모든응시자	
	8-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든응시자	
	9.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 증빙자료 ex) 수상실적, 자격증사본 등	해당자	

- ※ 모든 작성자료는 응시 직무분야와 관련되는 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증빙서류는 사본제출 가능하며, 채용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 발급분부터 인정
- ※ 제출기준(분량, 건수 등)은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안내된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작성한 내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클립, 더블클립 등으로 묶어서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별지서식 제1호>

응시원서

본인은 2025년 제2회 예산군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예산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주소	(우)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2025년 제2회 예산군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25년 월 일 예산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임기제지방행정주사보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함(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병기)

4.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수입증지 : 예산군 수입증지 구입하여 붙임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 예산군청 1층 민원봉사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주의 사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위의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

2. 응시표를 가지지 않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재교부 받아야 함

3.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을 지참하고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함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성명		응시 분야		응시 직급	

나. 직무관련 정보 (※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취지)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임용분야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등을 요약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다. 응시자격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박사	
					석사	
					학사	
근 무 경 력	근무처 (부서포함)	근무기간	근 무 월 일 수	주요업무실적	직 위	비 고
		20xx.xx.xx ~ 20xx.xx.xx	xx년 xx월 xx일			예) 상근직
		*임용분야와 연계된 경력만 작성		*비정규직의 경우 실 근무시간만 계산		예)비상근직
						예)프리랜서

라. 우대 사항 (※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						
수 상 실 적	대회(명)	수상내용			수상년월일	수여기관
연 구 · 용 역 · 실 적	(논문) 제목	발표 연월일	발표기관 (출판사)	주요내용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어 학	시험명	등록번호	응시일자	점수	영문성명	

- ※ 수상실적 : 증빙자료에 따라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 연구실적 : 증빙자료에 따라 증명(지도교수 서명 등)이 가능한 것만 인정
- ※ 자격증 등 : 증빙자료에 따라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마. 기타 실적, 능력 등

위 가~라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실적 및 능력 등이 있을 경우 기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어학능력, 책자발간, 기고, 특허 등 본인의
실적과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사안)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비상근직(프리랜서 등) 등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응시자는 주당 근무시간 또는
1일 근무시간과 근무기간을 각 직장별 인사업무 담당자의 확인을 필히 받아 제출
하여야 함

※ 작성사항(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을 기재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만 인정 함.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1. 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공통사항」 : 응시번호를 제외하고 공고문 참조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명 기재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임기제지방행정주사보 등)

나. 「응시자격」

유의사항

- 응시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은 시행계획 공고문상 명시된 본인에 해당하는 응시자격 요건에 맞게 기재

【학위사항 작성요령】

- ① 학위 : 전공분야, 학위취득(예정)일, 학위종류를 기재

【경력사항 작성요령】

- ① **응시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모두 기재** (최근 경력부터 기재)
 - ※ 경력사항은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에 의거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 ② 근무기간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기관명·과·팀 단위까지 기재
- ③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 (15일 이상 근무시 1월로 계산)

예시) 1년 2월 15일 → 15개월

※ 다만,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호에 따라 근무경력으로 기재

ㄱ. 시간제 근무(주 4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로 기재
예시) 시간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시 → 2년 기입

시간강사로 1년간 주 3시간 근무시 → 1년 144시간 근무로 1개월 기입

ㄴ.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담당 예정직무와 연관성 여부 및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이 제출 자료만으로 불분명한 경우

- 서류전형 시 직무 연관성 여부 및 근무경력 인정범위 등을 결정하므로 관련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함(추후 발급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므로, 본인이 발급 부서에 **본인의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등을 기재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별지서식6호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주요업무실적」

- ① **응시자격과 관련된 경력**에서 응시자 본인의 실적을 대표할 수 있는 실적을 근무기관(처) 별 각각 200자 이내의 분량으로 간략, 명료하게 작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명		응시 분야		응시 직급	
----	--	----------	--	----------	--

본인은 예산군의회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2025년 제2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예산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예산군의회인사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3조 규정에 따라 임용 시험 및 임용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I.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가. 수집 및 이용 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응시자격의 조회·확인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항목

-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직장명, 연구실적, 병역사항, 생년월일, 수상실적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선택사항) 메일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2.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가. 수집 및 이용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응시자격 조회·확인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다.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목적을 달성 할 때까지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서(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임용권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최종합격자 결정 사항과 공무원 임용후보자 등록 자료로 활용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목적을 달성 할 때까지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II.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 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필수사항, 고유식별 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지방공무원 임용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관한 권리와 불이익 안내를 이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5년 월 일

응시자 :

(서명)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회사명			
성명	()	생년월일	
담당업무	기간	업무내용	
	20 . . . ~ 20 . . .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 범위 해당업무 기재	
	“	“	
	“	“	
	“	“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발급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_____ (전화 : -)

2025년 월 일

_____ 대표이사 (직인 또는 실인)

예산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